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4. 16(금) 10:00

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경제환경국 소관)

## 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079호

나. 제 출 자 : 강수정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1. 4. 5.

라. 회부일자 : 2021. 4. 5.

## 2. 제안이유

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고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구청장 등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환경종합계획 수립(안 제4조)

라. 학교・사회・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(안 제6조~제8조)

마. 재정지원(안 제9조)

바. 홍보 및 표창(안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○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4조, 제9조, 제10조, 제17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1. 4. 5. ~ 4. 12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배경

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인간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,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1)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2)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-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함.

3) 학교・사회・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(안 제6조 ~ 제8조)

-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학교 및 사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.

4) 재정지원(안 제9조)

-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

### 다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와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금천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환경교육진흥법

[시행 2020. 5. 26.] [법률 제17326호, 2020. 5. 26., 타법개정]

**제4조(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6. 12.>
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6. 12.>
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6. 12.>

**제9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**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4.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7. 12. 12.>
1.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
2.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
3.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**제10조(사회환경교육의 진흥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
2. 국가기관, 군부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
3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4.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5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**제17조(경비지원 및 보조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· 법인 ·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6. 12.>